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948
- 발 의 자 : 김정 의원 외 10명
- 발 의 일 : 2025년 8월 11일
- 회 부 일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없도록 표창 금지 조문을 마련하고 있으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은 부재하여, 표창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표창을 취소하지 못하는 등 소극 행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.
-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(2023.7.)에서도 조례 개정이 권고된 사안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표창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. 주요내용

- 가. 표창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입법예고(2025.8.20. ~ 8.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표창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표창을 취소하지 못하는 등 소극 행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표창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(안 제6조의2)하기 위한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제6조의2(표창의 취소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.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기존에 표창의 취소는 공무원 및 시민 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표창의 취소 사유 발생 시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공적 심의를 요청하고, 심의 완료 후 표창 수여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,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창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.

☐ 공무원 표창취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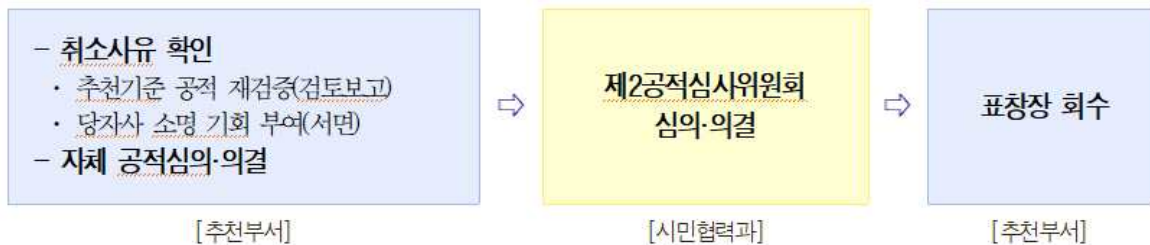
-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

-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,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
-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

※ 출처: 행정국, 「2025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」(인사과-7653), 2025.2., 18면 재인용.

□ 시민 표창의 취소

- 취소사유 발생 시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시 공적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 수여자 목록에서 제외
 -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 -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
- 표창취소 절차



※ 출처: 행정국, 「2025년 시민 표창 운영 계획」(시민협력과-2037), 2025.2., 11면 재인용.

※ 행정국은 표창 취소 절차에 **“공무원”**은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, 지급된 표창장·부상은 회수 조치, **“시민”**은 자체 공적심의회 및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, 지급된 표창장은 회수 조치한다고 하고 있음(행정국, 2025년 8월 25일 제출자료 참조).

- 또한, 최근 5년간 표창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, 공무원 26명(결격사유 중 기간제한 8명, 자격제한 5명, 기타 13명), 시민 5명(결격사유 중 기간제한 2명, 자격제한 2명, 기타 1명) 등 총 31명의 표창을 취소하고 있으며, 2022년에는 표창의 취소가 없었으나 매년 표창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조례에 표창의 취소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.

〈 최근 5년간 표창 취소 현황('20. ~ '25.7월) 〉

연도	합 계		공무원 표창				시민 표창			
	공무원	시민	거짓 공적	결격사유		기타	거짓 공적	결격사유		기타
				기간 제한	자격 제한			기간 제한	자격 제한	
합 계	26	5	-	8	5	13	-	2	2	1
2025.7월	-	2	-	-	-	-	-	1	-	1
2024	6	1	-	2	2	2	-	-	1	-
2023	5	-	-	-	-	5	-	-	-	-
2022	-	-	-	-	-	-	-	-	-	-
2021	10	2	-	6	2	2	-	1	1	-
2020	5	-	-	-	1	4	-	-	-	-

* 기타 14건 : 동일 공적 중복 표창(3),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대상(7), 기관 착오 등으로 인한 취소 요청(4)

※ 출처: 행정국, 2025년 8월 25일 제출자료.

□ 공무원 표창 결격사유

○ 기간 제한

- 서울시(시·자치구)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(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)
(단,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)
- 현 기관(市 국(3급) 단위, 區 국(4급) 단위) 전입 6개월 미경과자
-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(퇴직유공 제외)
-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

○ 자격 제한

-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, 음주운전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(제1호~제6호)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(사면·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)
- 불문경고 및 경징계 처분(견책, 감봉)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
※ 말소기간 : 불문기관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
- 기관 내·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·수사 중인 자,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※ 단,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
-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(단,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)
-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% 대상자(단, 퇴직유공은 제외)

※ 출처: 행정국, 「2025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」(인사과-7653), 2025.2., 17-18면 재인용.

□ 시민 표창 결격사유

- 기간 제한은 만 2년내 서울시장·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
- 자격 제한은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,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등)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임(자세한 내용은 <붙임 1> 참조)

※ 출처: 행정국, 「2025년 시민 표창 운영 계획」(시민협력과-2037), 2025.2. 참조.

- 한편,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로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 등의 포상 취소 규정 부재로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우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,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음.¹⁾
- 그럼에도, 2025년 현재까지 행정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지 않았고, 의원 발의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반영하게 되었는바, 앞으로는 정부 기관 등의 합리적인 개선권고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다만,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표창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어떤 공적심의회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, 현행 조례는 공적심의회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, “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”로 규정하는 등,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(시 공적심의회)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(이하 “공적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삭제 <2025.1.3.>
2. 삭제 <2025.1.3.>

1) 국민권익위원회, 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, 2023.7., 83-88면 참조.

-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(공훈에 따른 훈장,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)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-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-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- ⑥ 공적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- 또한, 안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공적심의회를 위원회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“공적심의회”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6조의2(표창의 취소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.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	제6조의2(표창의 취소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(개정안과 같음)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법조사관	최 문 숙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붙임 1 시민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

1. **주요비위**(음주운전, 금품향응수수, 공금 횡령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등)로 **형사처벌을 받은 자**
2. **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** 또는 단체,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가.
가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나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다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
라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마.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바.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사.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※ **예외**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,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⇒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시 가능하므로, 시장 및 장관급 표창 대상자는 본인 확인 및 현지조사(주변 평판 확인) 등 확인

3. **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(단체)**

- 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
 -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,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 제한
: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 불문,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⇒ 고용노동부 누리집(뉴스소식 > 공지사항 > 공고 > “산업재해” 검색)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②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⇒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(심결/법령 > 범위반사실 조회)를 통해 확인

③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

⇒ 고용노동부 누리집(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)를 통해 확인

4.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⇒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

- 국세청 누리집 (정보공개 - 고액상습체납자)
- 관세청 누리집 (알림·소식·관세청 공고·검색·고액상습체납자)
- 서울시 누리집 (분야별정보·행정·새소식·검색·체납)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

5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)

⇒ 시민표창관리시스템 > 표창조회

6. 만 2년 내 서울시장·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('24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)

⇒ 시민표창관리시스템 > 표창조회 및 정부포상 운영 부처 문의

7.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: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'표창 추천일(=시 공적심의회 개최일)'로 적용함